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전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경훈, 김규남,
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
김인제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봉양순,
서상열, 서준오, 왕정순,
유정인, 이병도, 이상욱,
이소라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
정준호, 최재란, 홍국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양육자와 아이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‘서울키즈 오케이존’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 이에 따라 「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)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호자 친화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의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5조의2(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)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호자 친화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의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